

1. 배경
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*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* 단,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

2. 내용

보험회사등이 적합성·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내 해지권 부여

* 관련 규정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
행사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보험회사, 대리점, 설계사 등의 판매원칙(적합성·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) 위반- 계약체결일부터 5년 또는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 해지요구 가능*- 해지요구서 제출 <p>* 의무보험의 경우 해지요구서 동종의 보험가입 필요</p>
해지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보험사는 해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<p>(회사가 수락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해지 가능)</p>

3. 접수 방법

- 메일 접수: customer@carrotins.com
- 우편 접수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파인애비뉴 B동 20층 캐롯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팀

위법계약 해지 요구서

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에 따라 캐롯손해보험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성명		생년월일	년	월	일
계약자와의 관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피보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:	주소			
금융 상품	상품명 필수				
	증권번호				
상품 내용	계약체결일	년	월	일	
	월보험료 등				
법 위반 사실 필수					
준수의무 위반 5가지 중 선택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성 원칙(법 제17조 제3항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성 원칙(법 제18조 제2항)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의무(법 제19조 제1항-3항)	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영업행위(법 제20조 제1항)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권유금지(법 제21조)				
법 위반사실 확인 에 필요한 객관적·합리적 근거					

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- 본인이 회사에 기재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,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회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'정당한 사유'가 있는 경우 귀하의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	대리인 성명 (법인의 경우)	친권자 성명	후견인 성명
(서명/인)	(서명/인)	(서명/인)	(서명/인)